

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안내

제 7 대 성북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사항을 알려드리오니, 의원님께서서는 희망하는 위원회를 기재하여 **2016. 6. 30 (목)까지 의원사무국**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

1.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(제3조)

- 가. 운영위원회 : 9인 이내
- 나. 보건복지위원회 : 7인 이내
- 다. 도시건설위원회 : 7인 이내
- 라. 행정기획위원회 : 7인 이내

2.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(제4조)

가. 운영위원회

-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-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
-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
-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

나. 보건복지위원회

- 복지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
-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

다. 도시건설위원회

- 도시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
-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
-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에 관한 사항

라. 행정기획위원회

-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,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
- 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
- 기획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

3. 상임위원의 임기 (제7조)

-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4. 상임위원장 (제8조)

-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 회의에서 선출한다.

※ **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음 (제5조, 제2항)**

5. 겸직 등 금지 (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)

-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, 그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희 망 위 원 회

의원님께서서는 보건복지 위원회, 도시건설 위원회, 행정기획 위원회, 중에서 희망하시는 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제 1 희망 : 위원회
- 제 2 희망 : 위원회
- 제 3 희망 : 위원회

제 출 자 : 성북구의회 의원

성 명 : (서명)

성북구 의회 의장 귀하

제출방법 : 직접 방문제출 또는 팩스 (02)2241-6626